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2일, 김예지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7.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상정/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13.)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 또는 장애 출현시기와 무관하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실상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활동지원급여(월한도액 최고 7,754,000원[1구간])와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최고 2,069,900원[1등급]) 간 급여량 편차가 크다는 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기존 활동지원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같은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65세 이전 활동지원급여 이력이 없거나,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인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형평성 제고 및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임.

다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간 목적, 지원대상, 재원(일반회계 또는 보험료) 등의 차이,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과 65세 이후 장애 발생자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정부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재원부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